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 북 구
(홍보전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22
----------	-----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온라인 홍보 매체의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신규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소셜미디어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소셜미디어 등 정의(안 제2조)
- 다. 소셜미디어의 활용(안 제3조)
- 라. 게시물의 유지·관리(안 제4조)
- 마.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안 제5조)
- 바.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안 제6조)
- 사. 개인정보 보호(안 제7조)
- 아. 시행규칙(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부패/인권/성별/아동영향평가 결과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반영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기타의견 일부반영)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부패 요인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아동영향평가 대상 아님)

구 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 내용 및 미반영 사유
성별 영향 평가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최근 성차별적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문제로 확산된 점을 고려할 때, 차별적 요소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함	반영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② 삭제 또는 차단 3.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인권 영향 평가	소셜미디어 활용은 시대적 요청이므로 원안에 동의함. 다만 나이, 언어,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소셜미디어 사용의 취약 계층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조례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반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 차별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의 경우 삭제 가능 조항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근거 마련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② 삭제 또는 차단 3.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구 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 내용 및 미반영 사유
인권 영향 평가	<p>제4조 2항에 따라 게시물 삭제, 차단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 광범위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함. 특히 1호, 5호, 6호, 9호, 10호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판단주체(구청)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 게시글의 삭제, 차단은 현행법을 현저히 위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그밖의 기준은 별도의 판단주체(위원회 등)를 지정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는 과정이 필요</p>	미반영	<p>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욕설, 비방 등)이 게재될 경우 본 조례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삭제 처리하여 소셜미디어가 불특정 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p>
	<p>제4조 (게시물의 유지관리) 2항의 삭제 / 차단의 경우 구청장이 관할은 하되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처리하기 보다는 별도의 심의 기구를 통한 심사 절차를 두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좋겠음</p>	미반영	<p>다만, 게시물 삭제 심의를 위한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심의 절차 추진 시에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위원회 설치, 심의는 불가능한 사항임</p>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활용하는 소셜미디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방송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뉴스레터”란 구정 소식과 생활정보를 이메일 등으로 발행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구민의견 개진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수시로 방송·발행 및 게재할 수 있으며, 뉴스레터의 경우는 주 1회 발행할 수 있다.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으며, 삭제할 경우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해당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사유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성별, 연령 및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
5.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

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6.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7.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9.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예술·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서포터스는 구에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 또는 사이버기자단 등 서포터스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서포터스는 기관 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사의 취재·작성
2. 콘텐츠의 공유·전파
3. 그 밖에 기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서포터스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서포터스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서포터스가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구청장은 서포터스가 작성한 콘텐츠 및 기사를 기관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제작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한 사이버 기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포터스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추진 및 경품제공,
소셜미디어 서포터스 원고료 등 [제정조례안 제5조,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행정국 홍보전산과장 유미조